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안’ 미국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조사부 조소연

1999년 1월 19일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안(HR354)’이 미의회에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05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안(HR2652)’을 손질, 보강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채택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이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하여 배타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HR354법안은 일정한 행위, 즉 부정이용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의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보호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바, 미국 HR354 법안은 법안 마련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HR354 법안을 번역, 소개한다.

H.R.354 RH

SECTION 1. 제목

이 법은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으로 칭한다.

SECTION 2. 정보수집물

미국 법전 제17편은 다음의 신규 장이 마지막에 추가됨으로써 수정된다.

제14장 정보 수집물

제140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의 수집물 - ‘정보의 수집물’이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들을 한 장소에 또는 한 출처에 함께 가져올 목적으로 수집되고 구성된 정보를 말한다. 이 용어는 개별저작물-전체적으로 이야기 형식을 띠는 어문저작물을 포함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수집물은 포함할 수 있다.
- (2) 정보 - ‘정보’란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구성될 수 있는 사실, 데이터, 저작물 또는 기타 무형의 자료를 말한다.
- (3) 일차시장 - 일차시장이란 다음의 모든 시장을 의미한다.
 - (A) 정보수집물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
 - (B) 제1402조에 의한 정보수집물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이윤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시장
- (4) 관련시장 - 관련시장이란 다음의 어느 시장을 의미한다.
 - (A) (i) 제1402조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정보수집물을 구

체화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 및
(ii) 그러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이윤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시장 또는

- (B) 제1402조에 의한 정보수집물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정보수집물을 구체화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단시일 내에 상업상 제공하기 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
- (5) 상업 - '상업'이란 의회에 의해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을 의미한다.
- (6) 유지 - 정보수집물을 '유지'한다 함은 정보수집물의 정보를 갱신하고, 검증하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402조 금지

(a)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making available)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추출(extraction)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에 대한 승계인에 의해 정보수집물을 구체화하고 있고 상업상 제공되거나 제공되도록 의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에 대한 승계인의 일차적 또는 관련 시장에 중대한(material) 해를 끼칠 목적으로, 상당한(substantial) 정도의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타인에 의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substantial)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추출하는 자는 제1406조에 정해진 구체 조치에 대해 그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게 책임이 있다.

(b) 추출의 다른 행위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에 대한 승계인에 의해 상업상 제공되거나 제공되도록 의도된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에 대한 승계인의 일차적 또는 관련 시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금 또는 기타 자원

을 투자함으로써 타인에 의해 수집·구성되거나 유지되는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추출하는 자는 제1406조에 정해진 구체 조치에 대해 그 타인 또는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한 승계인에게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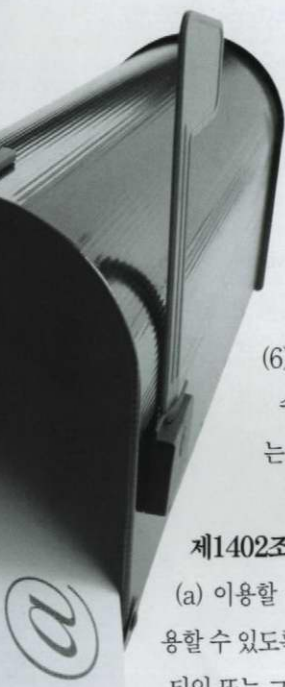
제1403조 허용되는 행위

(a) 합리적인 이용
제1402조에도 불구하고, 예증, 설명, 예, 논평, 비평, 교육, 연구, 또는 분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그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은 본 장 하에서의 침해는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그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 (1)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상업적 또는 비영리적인 정도
- (2)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3)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자의 선의 여부
- (4)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한 부분이 독립된 저작물이나 수집물에 구체화되는 정도·방법 여부, 그리고 그 정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추출된 수집물과 독립된 저작물 또는 수집물 간의 차이의 정도
- (5)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보호받는 정보수집물의 일차적 또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b) 일정한 비영리적 교육, 과학, 연구를 위한 이용
제1402조에도 불구하고, 제1402조에서 언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 시장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비영리적인 교육,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c)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 및 기타 상당하지 않은 부분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이나 기타 정보수집물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하여 정보의 개별적인 항목은 제1402조 하에 서의 정보수집물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4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를 회피하기 위해 정보수집물의 개별적인 항목이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반복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d)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독립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는 상당한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자로 타인에 의해 수집 · 구성되거나 유지된 정보수집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이 외의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 검증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수집 · 구성 또 는 유지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이 보유한 정보수집물로부터 정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 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용된 정보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되거나 추출된 당해 정보수집물에 대한 일차시장 또는 관련 시장에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원 수집물로부터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되거나 추출되어서는 안된다.

(f) 뉴스보도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주제(뉴스의 수집, 배포, 논평, 특집 또는 생활정보 보도를 포함)에 대한 뉴스 보도의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 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거나 추출된 정보가 시간에 민 감하고, 뉴스보도 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있고, 그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직접적인 경쟁을 목 적으로 진행되는 일관된 유형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g) 복사본의 이전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 법적으로 복제한 특정 복사본의 소유자가 그 복사본의 소유

를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h) 계보 정보

(1) 일반 - 제140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제한되지 않 는다.

(A) 비영리, 종교적인 목적상 계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

(B) 비영리, 종교적인 목적상 수집, 구성되거나 유지 되는 계보 정보를 개인적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

(2) 정의 - 본 항에서의 '계보 정보'란 출생일, 출생지, 세 례, 결혼, 죽음 또는 매장, 부모, 배우자, 자식 또는 형제 의 신원, 기타 조상의 신원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를 가리키는 정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i) 연구, 보호 또는 정보 활동 -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에 해당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 보 호 또는 정보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정보를 이용해 제공하 거나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 미연방, 주 또는 주의 정부조직의 공무원, 대리 인, 고용인 또는

(2) 위 (1)에 언급된 공무원, 대리인, 고용인 과의 계약 하에 활동하는 자

제1404 제외

(a) 정부기관 정보수집물

(1) 제외

본 장에서의 보호는 연방 · 주 · 지방에 상관없이 정부기관 - 정부기관의 고용인 · 대리인 또는 정부기관의 목적을 달성 하고 법 · 규정에 의해 확립된 정부기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을 받았거나 배타적으로 라이선 스를 받았거나 정부기관과의 계약하에서 일하고 있는 자를 포함. 단, 이 경우에 그 정보수집물이 고용, 대리, 라이선스, 허가, 계약 또는 자금조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되거나 구성되 거나 유지되어야 함) - 에 의해서 또는 위해서 수집 · 구성 또 는 유지되는 정보수집물에게까지 확장되어서는 안된다.

단 이 항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고용, 대리, 라이선스, 허가,

계약 또는 자금조달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자나 교육 또는 학문에 종사하고 있는 연방 또는 주립 교육기관에 의해 수집·구성 또는 유지되는 정보에 대한 본 장의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예외

위 (1)의 제외는 다음 각호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본 편의 제1405조 (g)항을 조건으로, 1934년 증권거래소법 하에서, 공인받은 증권거래소, 등록된 증권 협회, 등록된 증권정보 가공업소에 의해, 또는

(B) 본 편의 제1405 (g)항을 조건으로, 상품거래소법 하에서, 거래 시장에 의해

(b) 컴퓨터프로그램

(1) 확대되지 않는 보호 - 본 항의 (2)호를 조건으로, 본 장의 보호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정보수집물의 제조, 생산, 운영 또는 유지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그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요소들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구체화된 정보수집물 - 본 장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수집물은 단지 컴퓨터프로그램에 구체화되었고 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c) 디지털 온라인 통신

본 장의 보호는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어드레싱, 라우팅, 포워딩, 발송, 저장하거나 디지털 온라인 통신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소를 등록하거나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한 연결에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 구성 또는 유지되는 정보수집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에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제1405조 다른 법과의 관계

(a) 영향받지 않는 다른 권리들 - 본조 (b)항을 조건으로,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권법 상의 권리, 제한, 조치에 대해서, 또는 특허, 상표, 의장, 독점금지,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공적 문서에의 접근, 그리고 계약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정보에 관계된 어떠한 다른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b) 주법에 대한 우선권 - 본 장이 시행되는 때부터, 본 장의 대상물에 대하여 제1402조에 언급되어 있고 본 장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에 상응하는 모든 권리는 연방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일반법 또는 주법 하에서는 그러한 대상물에 대한 어떠한 상응하는 권리도 부여되지 못한다. 상표, 의장, 독점규제, 영업비밀, 프라이버시, 공적 문서에의 접근, 그리고 계약법과 관련한 주법은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제공한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c) 저작권법과의 관계 - 본 장의 보호는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는 공정사용 등의 저작권 제한에 대해 독립적이며, 또한 그 범위, 기간, 소유, 존속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본 장은 정보수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정보수집물 그 자체로서의 결과물보다, 그리고 본 편의 어느 다른 장에서 그 결과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d) 독점금지 -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상품과 서비스가 공중에 제공되는 방법에 대한 연방·주법상의 독점금지법에 의해 부여된 구속(상품과 서비스의 단독 제공자에 관한 것들을 포함)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 이용허락 -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허락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f) 1934년 통신법 -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34년 통신법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934년 통신법의 제 222조(f)(3)에 정의되어 있듯이 가입자 목록 정보를 어느 누구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g) 증권시장 및 상품시장 정보

(1) 연방증권관리위원회 및 상품선물관리위원회의 권한

- 연방증권관리위원회는 그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 문제에 해를 끼치는 경우 본 장의 적용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상품선물관리위원회는 그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 문제에 해를 끼치는 경우 본 장의 적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2) 연방기관 및 법 - 본 항 (1)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A) 1934 증권거래소법 또는 상품거래소법 규정의 적용

(B) 연방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상품선물관리위원회의 관할권 또는 권한

(C) 1934년 증권거래소법 및 그 하부 규칙 하에서 규정하는 자체조정기관 및 증권정보 처리장치의 기능 및 운영. (동법 및 그 하부 규칙에 따라 시장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

(3) 금지 - 제1403조의 (a), (b), (c), (d), (e), (g), (h), (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34 증권거래소법, 상품거래소법 및 그 하부 규칙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실시간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추출, 재판매,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403조의 (f)의 어떠한 규정도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시장정보 서비스에 대한 시장 대체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실시간의 체계적인 업데이트 또는 시장 정보의 상당 부분의 현시를 포함) 실시간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정의 - 본 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장 정보'란 1934년 증권거래소법 규정에 따라 또는 상품거래소법 및 그 하부 규칙에 의해 상품선물관리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는 계약 시장에 의해 수집, 가공, 배포, 출판되는 시세 및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h) 프라이버시의 보호 -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연방 또는 주(州)법 하에서의 보호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 손상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제1406조 민사적 구제

(a) 민사소송 - 제1402조의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는 문제가 된 액수에 상관없이 적당한 미국의 지방법원에 그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주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그러한 기관에 대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b) 일시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 본 조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제1402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일정한 조건에 기초하여 일시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금지명령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미국 내 어디에서나 행사할 수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의 지방법원에 의해 법정모욕 또는 기타 절차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c) 압류 - 본 조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조건하에서 제1402조를 침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거나 추출되는 정보수집물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1402조의 침해를 판시하는 최종 판결이나 명령의 일부로서, 제1402조를 침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거나 추출되는 정보수집물 내용의 모든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을 제작하는 수단인 모든 원판, 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또는 기타 물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변경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d) 재정적 구제 - 본 조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제1402조의 침해가 입증된 때에는, 원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그리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고려되지 않은 피고가 얻은 이익을 회복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이러한 이익이나 손해를 직접 평가하거나, 그의 지시 하에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는 단지 피고의 총수익액만을 입

증하면 된다. 피고는 비용과 공제액 주장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기초하여, 실제 손해액의 세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판명된 액수 이상의 액에 대해 관정할 수 있다.

법원은 재량 하에 승소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본 장 하에서 일어나는 소송이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그러한 기관들의 고용인, 대리인에 대하여 악의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결정되면 그러한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e)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기관 및 그들 고용인을 위한 재정적 구제에 대한 감액 또는 면제 - 만일 피고가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그러한 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의 고용인, 대리인인 경우, 그들의 행위가 본 장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믿었거나 믿음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법원은 (d)항의 재정적인 구제를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할 수 있다.

(f) 미국정부에 대한 소송 - (b) 및 (c)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 주정부기관에 대한 구제 - 본 장에 의한 구제는 적용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정부기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h)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구제 -

(1) 본 장에 의한 구제는 ISP가 의도적으로 제1402조를 침해하지 않는 한 ISP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 항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란 송수신되는 자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의해 구체화된 기점 간에, 전송·라우팅·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한 연결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1407조 형사죄와 벌칙

(a) 침해

(1) 일반적으로 - 다음 각호와 같이 고의로 제1402조를 침해하는 자는 (b)에 규정된 벌에 처한다.

(A)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인 이익 또는 재정상의 이익을 위하거나

(B) 그 정보를 수집·구성하거나 유지한 자에게 1년동안 100,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게 하거나

(C) 그 정보를 수집·구성하거나 유지한 자에게 1년 이내에 50,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2) 비적용 - 본 조의 규정은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법집행기관의 고용인 또는 에이전트 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그러한 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의 고용인, 대리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벌칙

(1) (a)(1)(A)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a)(1)(A)에 규정된 죄를 재차 또는 계속하여 범한 때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a)(1)(B)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2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a)(1)(B)에 규정된 죄를 재차 또는 계속하여 범한 때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 (a)(1)(C)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C) 피해 영향 진술

(1) 형사절차에 대한 연방 규율 32(c)에 따라 진정서를 준비하는 동안, 죄에 대한 피해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집행유예 담당관은 죄에 대한 피해와 피해에 의해 겪은 상처 및 손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피해 영향 진술(그 피해에 대한 죄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된 것을 포함)을 접수해야 한다.

(2) 피해 영향 진술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A) 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보를 수집·구성하거나 유지하는 자
- (B) 그러한 자의 법적 대리인

제1408조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a) 이용자가 수집물이 처음 상업적으로 제공된 때를 결정할 수 없을 때의 명시적인 항변 - 침해의 출처가 되는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본장의 보호 대상이 될 만큼의 자원의 투자가 소요된 정보수집물의 부분을 본 장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 또는 그 이익에 대한 승계인에 의해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제공된 날짜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15년 이상 경과했는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떠한 재정적인 구제도 제1402조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b) 고지 - 본 장의 시행일 이후에 정부기관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으로 구성된 정보수집물인 경우, 정부기관 수집물 및 정부기관에서 얻어진 것임을 알리는 합리적인 고지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가 어떠한 정부수집물 버전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거나 추출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어떠한 재정적인 구제도 제1402조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1) 일반적으로 - 정부기관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정보수집물의 경우, 비영리 교육, 과학, 연구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그러한 기관, 도서관, 기록보관소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다음 상황의 모든 것이 적용된다면, 정부기관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하여 제1402조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대해 완벽히 항변한다.

- (A) 정부기관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 (B) 정보가 비영리 교육, 과학, 또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추출되었고 얻어진 정보를 시장에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C) 정부기관 정보를 추출하기 전에, 그것을 추출한 자가
i)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선의의 노력을 행하였고

ii) 본 장에서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에게 추출되는 정보를 분명히 알리고 i)에서와 같은 합리적인 선의의 노력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상의 요청을 한 경우

(D) 본장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정보를 요청받은 후, 정부기관 또는 그 고용인, 에이전트 또는 배타적인 이용허락자로부터 최초로 얻어진 정부기관 정보가 담겨져 있는 형태 또는 기타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보의 검증, 추출 및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 적용 - 본항은, 본장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정부기관, 고용인, 에이전트, 또는 이용허락자로부터 얻은 최초의 형태로서 요청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알리고 추출하는 경우에, 본장의 시행일 전에 존재하는 수집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409조 소송에 대한 제한

(a) 형사소송 절차 -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장에 의한 형사소송절차를 밟지 못한다.

(b) 민사소송 -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소송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 장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 추가적인 제한 -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본장의 보호 대상이 될 만큼의 자원의 투자가 행하여진 정보수집물의 부분을 최초로 상업적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여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존의 수집물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본장 하에서의 보호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거나

추출된 기존 수집물의 부분과 관련하여, 15년이 경과한 기존의 수집물의 복사본으로부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 수 없다.

(d) 최초로 상업적으로 제공된 부분이 15년을 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담 -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 본장의 보호 대상이 될 만큼의 자원의 투자가 행하여진 정보수집물의 부분이 그 투자자 또는 그 사업상의 이익을 갖는 승계인에 의해 최초로 제공된 날짜가 피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추출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15년 내에 해당함을 본장의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제1402조의 침해에 대한 소송은 속행되지 않는다.

제1410조 연구 및 보고서

본 장의 시행일 이후 3년 내에, 저작권 등록부, 부 법무장관, 법무성의 독점금지과는 추출된 정보가 어떤 다른 출처로부터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을 때, 정부기관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는 정보수집물을 포함하기 위해 제1408(c)에 규정된 항변이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협력 연구를 실시하고 의회에 협력 보고서를 제출한다.'

SECTION 3.

(A) 장들의 목차 - 미국법 제17편에 대한 장들의 목차는 다음을 마지막에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1401.

(b) 지방법원관할권 - (1) 미국법 제28편 제133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A) 상기 조항의 제목 부분 중 'trademarks'를 삭제하고 'trademarks, 정보수집물'을 삽입
- (B) 상기 조항의 (a)항에 trade-marks를 삭제하고, 'trademarks로 삽입
- (C) 상기 조항의 (b)항에 trade-mark를 삭제하고, 'trademark로 삽입

(D) 상기 조항의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

(d)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제17편 제14장에서 일어나는 정보수집물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다. 그러한 관할권은 주법원(court of district)에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어떠한 법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2) 미국법 제28편 제85장을 위한 각 조의 목차에서 제1338조와 관련된 항목은 'trade-marks'를 삭제하고 'trademarks, 정보수집물'을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c) 소송을 제기하는 장소 - (1) 미국법 제28편 1400조는 다음을 마지막에 추가시킴으로써 수정된다.

(c) 정보수집물과 관련하여 제17편 제14장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은 피고나 피고의 에이전트가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방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2) 미국법 제28편 제1400조에 대한 제목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Sec. 1400. 특허 및 저작권, 마스크, 디자인, 정보수집물

(3) 미국법 제28편 제87장의 앞부분에 있는 각 조의 목차에 있는 제1400조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400. 특허 및 저작권, 마스크, 디자인, 정보수집물

- (d) 연방 소송청구 관할 법원 - 미국법 제28편 제1498조
- (e)는 '제9편 제9장' 뒤에 '제17편 제14장'에 의한 정보수집물에 부여된 보호에'를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SECTION 4. 시행일

(a) 일반적으로 - 본 편과 본 편에 의해 수정된 것은 이 법의 시행일에 효력을 발하며, 시행일 이후에 일어난 정보의 추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b) 영향을 받지 않는 선행 행위 - 어느 누구라도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자신 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승계인에 의해 정보수집물로부터 합법적으로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Section 2에 의해 추가된 제17편 제14장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